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

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소득기준”이라 한다)”이란 1개월간의 보수가 8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득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명목 임금 상승률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보수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월평균보수”를 “월보수”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달의 직전 달의 보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제104조의8제7항제1호가목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 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의2”로 한다.

제142조의2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제14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의 통보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 중 “영 제3조의3”을 “영 제3조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수합산 신청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월평균보수, 보험료, 퇴직금”을 “월보수”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월평균보수, 보험료, 퇴직금”을 “월보수”로 한다.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사목 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3호 중 “임금”을 “임금(보수)”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월평균보수)”를 “(월보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p> <p>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p> <p>2. 일용근로자</p> <p>③ (생략)</p>	<p>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p> <p>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소득기준”이라 한다)”이란 1개월간의 보수가 8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득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

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
업의 보수 합산을 원하는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
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
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
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
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
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
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이 있는

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생략)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③ 보수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신설>

같음)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③ ~ ⑥ (생략)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
⑥ (생략)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
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
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
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
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
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
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

규모 기준 이하일 것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가. 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
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
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
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 (생략)
2. 가족관계·근로자·장애인·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 가. ~ 아. (생략)

<신설>

<신설>

3. 4. (생략)
-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 6.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3. 4. (현행과 같음)
-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의 수리 및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의 통보

7. ~ 14. (생략)

③ ~ ⑪ (생략)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 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다. (생략)

<신설>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영 제3조의4-----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

2. ~ 25. (생략)

② ~ ④ (생략)

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